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 체계 도입〉

■ 위성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677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세 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1
IV. 참고사항	3
IV. 검토의견	4
1. 총괄 검토	4
가. 개정안의 개요 및 필요성	4
나. 개정안의 구성 체계	9
2. 조문별 검토	12
가. 경찰공무원 신분 체계의 이원적 재편(안 제1조~제3조)	12
나. 임용권자 및 독립적 인사·징계위원회 구성 (안 제5~7조, 제34~35조)	16
다. 승진 (안 제16~22조)	26
라. 정년 (안 제32조)	32
마. 신규채용 (안 제10조)	36
바. 복제 (안 제28조)	4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위성곤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04. 28.
3. 회부연월일 : 2026. 04. 29.

II.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경찰 조직이 자치경찰 사무를 함께 수행하는 ‘일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신분과 인사권이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과 자치분권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자치경찰제의 실질적인 이원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시·도지사에게 실질적인 인사권한을 부여하며, 그에 따른 임용권·인사권 및 복무 규정을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경찰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밀착형 치안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 가.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 경찰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경찰공무원을 임용 기관에 따라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치안총감부터 순경까지의 계급 체계를 적용함(안 제3조).
- 다.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와 징계를 독자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설치하여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함(안 제5조 및 제34조).
- 라. 총경급 이상 자치경찰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하도록 하고, 경정 이하의 임용권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부여하여 지방 행정과 치안 행정의 결합력을 강화함(안 제7조).
- 마.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상호 채용 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유연한 인사 교류 체계를 구축하여 치안역량의 불균형을 해소함(안 제10조 및 제15조).
- 바.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경찰공무원과 구별되는 복제를 착용하도록 하되, 국가경찰-자치경찰 간 신분 이동 시에도 계급정년을 합산 산정하여 신분상의 안정성을 도모함(안 제28조 및 제32조).
- 사. 자치경찰공무원에게도 국가경찰공무원에 준하는 정치적 중립 의

무와 직무 유기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엄격한 벌칙을 적용하여 치안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함(안 제39조).

IV.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V.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개정안의 개요 및 필요성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제하여 임용, 승진, 교육훈련, 복무, 징계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현행 자치경찰제 역시 국가경찰공무원이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함께 수행하는 이른바 ‘일원화 모델’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음.

현행 자치경찰제는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운영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음. 자치경찰사무는 생활안전·교통·경비 및 일부 수사사무로 한정되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경찰관은 국가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현장에서 종전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며, 국가경찰사무와 수사사무는 각각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체계를 두고 있음. 또한 자치경찰사무 관련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편성되고,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일부 임용권도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사되고 있으나, 시·도 간 인사교류, 승진임용, 징계 및 복무관리 등 주요 인사운영은 국가경찰 체계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주요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자치경찰의 권한 범위와 인사체계는 국가의 행정체계와 지방분권 수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미국·독일·일본은 자치경찰이 범죄 예방·수사 등 일반적인 경찰사무를 수행하는 반면,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교통·질서유지 등 제한적인 경찰사무를 담당하고 있음. 또한 경찰책임자의 임용권 역시 지방정부가 행사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국가가 고위직 인사 또는 지휘·감독 권한을 유지하는 사례도 확인되는 등 자치경찰제의 조직 형태와 권한 배분은 국가별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되고 있음.¹⁾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원화 모델의 제주자치경찰제가 운영되고 있으며,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과 지방직 자치경찰공무원을 두고 있는 유일한 사례에 해당함.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면서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관광경찰 및 특별사법경찰 업무

1) 해외 주요국 운영 사례(※ 자료: 경찰청 제공)

구 분	자치경찰 주요 사무	임용권
미국	▶통상 제한적 경찰업무(교통 등) 담당	▶분방(state) 경찰 책임자를 분방지사가 임명 ※ 각 주마다 임용절차가 상이하며, 연방경찰의 분방경찰 지휘·감독 불가
영국	▶예방, 수사 등 일반적 경찰업무를 담당	▶(잉글랜드, 웨일즈) 지방경찰청장을 주민직선 치안위원장이 임명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지방경찰청장을 의회 경찰위원회가 임명
일본	▶도도부현*경찰이 예방, 수사 등 일반적 경찰업무 담당 ※ 일본 최상위 행정구역 체계로 한국의 시·도 개념과 유사	▶도도부현경찰본부 본부장 및 지휘부를 국가공안위원회가 임명 ※ 단, 경시정(총경) 이상 승진 시 모두 국가직 전환 ▶국가경찰이 도도부현경찰을 구체적 지휘·감독
프랑스	▶제한된 예방경찰업무만 수행	▶기초자치단체장(시장)이 자치경찰책임자이며, 조직·인사권 보유 ※ 긴급사태 시 관선 도지사, 책임 관선지사, 내무부장관이 순차적으로 자치경찰을 지휘
독일	▶예방, 수사, 기동경찰 등 전면적 경찰업무 수행	▶분방 경찰국장을 분방지사가 임명 ※ 연방경찰의 분방경찰 지휘·감독 불가
스페인	▶예방경찰과 수사업무 수행 ※ 국가경찰은 예방경찰 기능이 없으며 수사 및 독점사무 수행	▶자치지방경찰장을 자치지방지사가 임명 ※ 단, 자치지방경찰 고위직은 국가경찰간부 중에서 임명(의무) ▶자치경찰장은 시장이 임명
이탈리아	▶제한된 질서업무 수행 ※ 국가경찰은 예방과 수사업무 수행	▶자치경찰책임자를 지방자치단체장(시장)이 임명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치안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다만 제주자치경찰제는 특별자치도라는 특수한 행정·재정 여건을 전제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이를 전국적인 자치경찰제 모델로 일반화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

이와 같은 해외 주요국 및 제주자치경찰제의 운영 사례는 자치경찰제의 조직 형태와 권한 배분, 인사체계가 국가 또는 지역의 행정체계와 지방분권 수준, 재정여건 등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될 수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자치경찰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무의 배분뿐만 아니라 조직·인사·재정체계가 유기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그러나 현행 자치경찰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면 국가경찰 조직 내에서 국가직 경찰공무원이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함께 수행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인사권·승진·징계 및 복무관리 등 주요 인사운영 역시 국가경찰 체계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이로 인해 자치경찰이 수행하는 사무의 상당 부분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교통·지역경비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치안행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아울러 현행 체계는 전국적으로 균질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치안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에는 장점이 있으나, 지역별 인구구조, 생활환경, 범죄양상 및 치안수요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음. 특히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 조직 내에서 수행되는 구조에서는 지역 중심의 책임치안 구현, 주민 참여 확대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 수립 등 자치경찰제 도입 당시 기대되었던 지방분권적 치안체계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안은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을 구분하고, 자치경찰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별도의 계급체계와 인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및 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치총경 이상은 시·도지사가, 자치경정 이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임용하도록 하는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신분 및 인사체계를 구조적으로 분리하려 하고 있음. 아울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상호 임용, 경력 인정 및 교육훈련 체계를 마련하고, 자치경찰공무원의 복무, 징계, 정치적 중립 의무 및 복제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자치경찰 운영에 필요한 국가경찰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인사·복무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와 같은 개정안은 현행 자치경찰제가 국가경찰 조직 내의 사무분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조직·신분·인사체계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자치경찰제를 실질화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책임치안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밀착형 치안

행정을 구현하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음.

다만 자치경찰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국가경찰과 독립된 인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현행 자치경찰제의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역 간 재정여건에 따른 처우 격차, 승진기회의 불균형,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행사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문제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조직 운영의 이질화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 교육훈련, 계급정년 및 복무관리 체계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와 운영상 혼선이 발생할 우려도 있음. 따라서 자치경찰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는 존중될 필요가 있으나, 국가 치안의 통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지역 간 치안서비스 수준의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사·재정 및 조직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나. 개정안의 구성 체계

개정안은 현행 「경찰공무원법」 전부를 개정하는 형식으로, 본문 제1조부터 제39조까지의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개정안은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을 구분하는 이원적 체계를 전제로 경찰공무원의 신분·계급·임용·교육·복무·징계 및 벌칙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편하고 있으며, 조문 체계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우선 안 제1조는 법률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의 구분, 특정직 국가공무원 및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체계, 자치경찰공무원의 별도 계급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임용 원칙, 임용권자, 인사위원회, 신규채용 및 승진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안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치총경 이상은 시·도지사가, 자치경정 이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는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 상호 임용, 시보임용 특례, 전직 및 경력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상호 임용 시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시보임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 및

경력 인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안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에서는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 휴직, 직위해제, 정년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정년제도를 규정하면서 계급정년 산정 및 경력 인정과 관련한 특례를 두고 있음.

안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에서는 경찰공무원의 복무, 정치적 중립 의무, 영리업무 제한 및 복제(제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해서도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자치경찰공무원은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공무원의 제복과 구별되는 제복을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32조부터 제39조까지에서는 계급정년 특례, 징계, 고충심사 및 벌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의 정년 산정 특례, 비상사태 시 복무의무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부칙에서는 국가경찰공무원의 자치경찰공무원 전환, 조직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시행 준비 절차 및 시행일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경찰공무원법」과 개정안 비교 >

연번	구분	현행	개정안
1	신분	▶ 전원 국가직	▶ (국가경찰) 좌동 ▶ (자치경찰) 지방직
2	계급	▶ 치안총감~순경	▶ (국가경찰) 좌동 ▶ (자치경찰) 자치치안정감~자치순경
3	임용권	▶ (총경이상) 대통령 ※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복직은 경찰청장 ▶ (경정이하) 경찰청장 ※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면직은 대통령	▶ (국가경찰) 좌동 ▶ (자치경찰) - (자치총경 이상) 시·도지사 ※ 자치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복직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 (자치경정 이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 자치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면직은 시·도지사
4	위원회	▶ (인사위원회) 경찰청에 설치 ▶ (징계위원회) - (경무관이상)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 (총경이하) 경찰기관 ▶ (고충심사위원회) 경찰기관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	▶ (국가경찰) 좌동 ▶ (자치경찰) ※ 전 계급 독자위원회 설치 - (인사위원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 (징계위원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자치경찰관서 - (고충심사위원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5	승진심사	▶ 경무관 이하로의 승진심사	▶ (국가경찰) 좌동 ▶ (자치경찰) 자치경무관 이하로의 승진심사
6	승진시험	▶ 경정 이하로의 승진시험	▶ (국가경찰) 좌동 ▶ (자치경찰) 자치경정 이하로의 승진시험 ※ 경찰청장에게 시험 실시 위탁 가능
7	정년제도	▶ 연령정년 : 60세 ▶ 계급정년 :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 - (강등 시) ① 강등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 적용, ② 강등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 합산 - 계급정년 산정 시, 국가경찰공무원이 제주자치경찰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합산	▶ (국가경찰) 좌동 ▶ (자치경찰) 강등 시 계급정년 규정 미적용 - 계급정년 산정 시, 국가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만 합산
8	신규채용 및 교육훈련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주관 하여 실시	▶ (국가경찰) 좌동 ▶ (자치경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주관 ※ ① 경찰청장에게 시험 실시 위탁 가능 ② '장학 지급 특별채용' 신설 ③ 자치경찰본부장 외부채용 가능
9	제복	▶ 부령(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에 정하는바에 따라 제복 착용	▶ (국가경찰) 좌동 ▶ (자치경찰) 시·도조례에서 규정

2. 조문별 검토

가. 경찰공무원 신분 체계의 이원적 재편(안 제1조~제3조)

개정안은 국가경찰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유지하고, 자치경찰 공무원의 신분은 지방직으로 전환하되 자치치안정감~자치순경으로 계급체계를 적용하려는 것임.

현행법	전부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에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服務), 신분 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u><신 설></u>	제2조(정의) ----- -----.
<u><신 설></u>	1. “국가경찰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특정직공무원을 말한다.
1. ~ 3. (생략)	2. “자치경찰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특정직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계급 구분) 경찰공무원의 계	3. ~ 5.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제3조(임용 및 계급 구분) ① 경찰공	제3조(임용 및 계급 구분) ① 경찰공

현행법	전부개정안
<u>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u> <u><신 설></u>	<u>무원은 임용 기관에 따라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으로 구분한다.</u> <u>② 경찰공무원(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u> <u>1. 국가경찰공무원</u> <u>치안총감(治安總監)</u> <u>치안정감(治安正監)</u> <u>치안감(治安監)</u> <u>경무관(警務官)</u> <u>총경(總警)</u> <u>경정(警正)</u> <u>경감(警監)</u> <u>경위(警衛)</u> <u>경사(警査)</u> <u>경장(警長)</u> <u>순경(巡警)</u> <u>2. 자치경찰공무원</u> <u>자치치안정감(自治治安正監)</u> <u>자치치안감(自治治安監)</u> <u>자치경무관(自治警務官)</u> <u>자치총경(自治總警)</u> <u>자치경정(自治警正)</u> <u>자치경감(自治警監)</u> <u>자치경위(自治警衛)</u> <u>자치경사(自治警査)</u> <u>자치경장(自治警長)</u> <u>자치순경(自治巡警)</u>

개정안은 안 제2조에서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 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자치경찰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안 제3조에서는 자치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자치총경’, ‘자치경정’ 등 국가경찰과 구별되는 별도의 계급 명칭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을 제외한 현행 자치경찰제가 국가경찰 조직체계 내에서 국가경찰공무원이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함께 수행하는 구조로 운영됨에 따라, 자치경찰의 조직적 독립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자치경찰의 신분과 사무를 일치시키고 지방 중심의 치안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음. 특히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치안행정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과 관리 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강화하려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국가경찰과 구별되는 별도의 계급 명칭을 도입한 것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적 구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다만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 및 계급 체계가 분리됨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인사·조직 및 지휘체계 측면에서

상당한 체계로 운영되게 됨. 이에 따라 광역범죄 대응, 재난 대응 및 합동수사 등 양 조직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조직 간 연계와 협력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또한 자치경찰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 차이에 따라 보수·복지 및 근무환경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바, 장기적으로 지역 간 치안서비스 수준의 격차로 이어질 우려도 있음. 특히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같이 전국적으로 균등한 수준의 치안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치안 역량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른바 ‘안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음. 아울러 국제성 범죄, 광역 범죄 및 재난 대응 등 광역적 치안수요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 운영 과정에서도 일정한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바, 자치경찰의 분권성과 국가 치안의 통일성 간 균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나. 임용권자 및 별도의 인사·징계위원회 구성 (안 제5조~제7조,
제34조~제35조)

개정안은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자치총경 이상)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자치경정 이하)에게 부여하고, 별도의 인사·징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현행법	전부개정안
제5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u>경찰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u>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u>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u> 를 둔다. ② <u>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신 설></u>	제5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u>국가경찰공무원의</u> ----- ----- ----- ----- <u>국가</u> <u>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u> ----- -----. ② <u>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u> 요 사항에 대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③ <u>국가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와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법	전부개정안
제6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2. (생략) 3. 그 밖에 <u>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u>	제6조(인사위원회의 기능) ----- -----. 1. 2. (현행과 같음) 3. ----- <u>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u> -----
제7조(임용권자) ① <u>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u>	제7조(임용권자) ① <u>국가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용한다.</u> 1. <u>총경 이상의 국가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u> 2. <u>경정 이하의 국가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u>
② <u>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u>	② <u>자치경찰공무원(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용한</u>

현행법	전부개정안
<u>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u> ④ <u>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u> ⑤ <u>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u>	<u>를 시·도지사 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u> ④ <u>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u> <u>----- 국가경찰공무원---</u> <u>----- 국가수사본</u> <u>부장, 소속 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u> <u>수 있으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u> <u>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u> <u>따라 조례로써 자치경찰공무원의 임</u> <u>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자치경찰</u> <u>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u> ⑤ ----- <u>해양경찰청장, 시·도지</u> <u>사,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또</u> <u>는 ----- 임용권의 위임을 받-</u> <u>-----</u> <u>-----</u>

현행법	전부개정안
관하여야 한다. 제32조(징계위원회) ①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②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③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성·관할·운영, 징계의결의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징계의 절차)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다만, 파면	-----. 제34조(징계위원회) ① 경무관 이상의 <u>국가경찰공무원에</u>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② 총경 이하의 <u>국가경찰공무원에</u>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해양경찰관서에 <u>국가경찰공무원</u> 징계위원회를 둔다. ③ <u>자치경찰공무원(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치경찰관서에 자치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u> ④ <u>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성·관할·운영, 징계의결의 요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35조(징계의 절차) ① <u>국가경찰공무원의 징계는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u>

현행법	전부개정안
· 해임·강등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하되,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고,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이 한다. 다만, 파면·해임·강등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u>국가경찰공무원의</u> 임용권자가 하되,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고,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② <u>자치경찰공무원(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징계는 자치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파면·해임·강등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하되,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하고,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시·도자치경찰본부장의 제청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한다.</u>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의 파면과 해임은 제1항에 따른다.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을 국가경찰 중심의 단일 인사체계를 전제로 규율하고 있으며,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중적 인사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나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임용권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재위임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현행 자치경찰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국가경찰공무원이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함께 수행하는 이른바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고 있는바, 자치경찰만을 위한 별도의 독립적 인사기구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임용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반면 개정안은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국가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와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또한 안 제7조는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를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자치총경 이상 자치경찰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자치경정 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임용하도록 하고 있고,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일부를 자치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위원회 및 고충심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여 국가경찰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인사·징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이는 현행 국가경찰 중심의 중앙집중적 인사 구조에서 벗어나 자치경찰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음. 특히 개정안은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승진·보직관리·징계 등 인사 전반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경찰 조직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는 지역 치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실질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지방분권적 책임치안체계를 구축하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또한 지역별 치안 수요와 지역 특성을 인사 운영에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보다 탄력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특히 지역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경찰 인력의 배치·운영에 관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임용권 부여 및 위원회 운영 주요내용 (개정안) >

구분		국가경찰	자치경찰
총경 (자치총경) 이상		▶ 경찰청장 추천 → 행안부장관 제청 → 국무총리 경유 → 대통령 임용 ※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복직은 경찰청장이 임용	▶ 시·도자치경찰본부장 추천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제청 → 시·도지사 임용 ※ 자치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복직은 시·도자치경찰본부장 제청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임용
	경정 (자치경정) 이하	▶ 경찰청장이 임용 ※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면직은 경찰청장 제청 → 국무총리 경유 → 대통령 임용	▶ 시·도자치경찰본부장 제청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임용 ※ 자치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면직은 시·도자치경찰본부장 추천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제청 → 시·도지사 임용
시·도자치경찰 본부장 및 자치경찰대장 임용		-	▶ (시·도자치경찰본부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제청 → 시·도지사 임용 ▶ (자치경찰대장) 시·도자치경찰본부장 추천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제청 → 시·도지사 임용
임용권 위임		▶ 경찰청장의 임용권 일부를 국가수사본부장, 소속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 가능 ▶ 대통령 또는 경찰청장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 임용권'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 가능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자치경찰공무원 임용권'의 일부를 자치경찰관서장에게 위임 가능
위 원 회	인사	▶ 경찰청(해양경찰청)에 국가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설치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에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설치
	징계	▶ (경무관 이상)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 ▶ (총경 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 (全系列)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치경찰관서에 징계위원회 설치
	고충 심사	▶ 경찰청(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에 자치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설치

또한 국가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및 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자치경찰의 인사·징계 및 고충처리 절차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특히 자치경찰 조직의 운영 책임과 인사권을 일치시킴으로써 지방 차원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측면에서도 일정 부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전 계급의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별도의 인사·징계체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자치경찰 조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는 인정될 수 있음. 그러나 자치총경 이상 고위직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해서도 별도의 임용 및 인사체계를 적용함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고위 인사체계가 구조적으로 분리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고위직 경찰공무원은 자치경찰사무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치안정책 추진, 시·도 간 협력 및 위기상황 대응 과정에서 핵심적인 지휘·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경찰공무원과는 다른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자치총경 이상 고위직은 광역범죄 대응, 국가적 재난 상황 및 시·도 간 공동 대응 과정에서 전국적인 경찰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위 지휘부 인사체계의 이원화가 통일적인 치안 지휘체계 유지와 국가 치안의 일관성 확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임.

다. 승진 (안 제16조~제22조)

개정안은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이원화 체계에 맞추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승진체계를 분리하고, 자치경찰 공무원의 승진심사 및 승진시험 권한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	전부개정안
<u>제15조(승진) ① (생략)</u> ② 경무관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여 한다. 다만,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u>승진</u>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과 승진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u>대해서는</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생략) <u>제15조의2(전사·순직한 승진후보자의 승진)</u>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하여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본다. <u>제16조(근속승진)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을 경장, 경사, 경위,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인사</u>	<u>제16조(승진) ① (현행과 같음)</u> ② ----- ----- ----- <u>승진</u>에서는 ----- -----. ③ ----- <u>대하여</u>----- ----- -----. ④ (현행과 같음) <u>제17조(전사·순직한 승진후보자의 승진)</u> 제20조제1항----- ----- ----- ----- -----. <u>제18조(근속승진)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제16조제2항----- ----- ----- <u>근속승진임용</u> 할 -----.</u>

현행법	전부개정안
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순경을 경장으로 <u>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u>: 해당 계급에서 4년 이상 근속자 2. 경장을 경사로 <u>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u>: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3. 경사를 경위로 <u>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u>: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 4. 경위를 경감으로 <u>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u>: 해당 계급에서 8년 이상 근속자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임용의 <u>기준 및 절차</u>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승진심사위원회) ① 제15조 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위하여 <u>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경찰청·해양경찰청·시·도경찰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지방해양경찰관서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u>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승진심사위원회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승진대상자 명부의 선순위자	----- ----- ----- ----- -----. 1. ----- <u>각각 근속승진임용하려</u>----- ----- 2. ----- <u>각각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계급</u>----- ----- 3. ----- <u>각각 근속승진임용하려</u>----- ----- 4. ----- <u>각각 근속승진임용하려</u>----- ----- ② (현행과 같음) ③ ----- <u>기준,</u> ----- -----. 제19조(승진심사위원회) ① 제16조 제2항----- <u>경찰청, 해양경찰청 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u>-- <u>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시·도자치경찰본부와</u> ----- ----- <u>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u>----- -----. ② ----- ----- <u>제16조제3항</u>----- -----

현행법	전부개정안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승진 시험에 합격된 승진후보자는 제외한다) 순으로 승진시키려는 결원의 5배수의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선발한다. ③ (생략) 제18조(승진후보자 명부 등)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제17조제2항에 따라 승진후보자로 선발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경무관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의 등재 순위에 따른다. ③ 승진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과 작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9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① 경찰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1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다만,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든 경찰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승진후보자 명부 등) ① -----제7조제4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제16조제2항-- 제19조제2항----- ----- -----. ② ----- ----- 등재순위-----. ③ ----- 제13조----- -----. 제21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① ----- ----- 제16조----- -----. ----- 특별승진시킬 ----- -----. 1. ----- ----- 제4호까지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

현행법	전부개정안
2. (생략) 3. <u>직무수행</u>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사람 ② (생략) <u>제20조</u>(시험실시기관과 응시자격 등) ① <u>경찰공무원</u>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신설> ② <u>제1항</u>에 따른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1호부터 제4호까지</u> ----- 2. (현행과 같음) 3. <u>직무수행</u> ----- ② (현행과 같음) <u>제22조</u>(시험실시기관과 응시자격 등) ① <u>국가경찰공무원</u>----- -----. ----- ----- ----- ----- <u>시·도경찰청장</u> 또는 ----- -----. ② <u>자치경찰공무원</u>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실시한다. 다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자치경찰본부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u>시·도자치경찰위원회</u> 위원장은 <u>제2항</u>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채용시험 및 승진시험의 실시업무를 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u>제1항 및 제2항</u>----- ----- -----.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 및 승진시험을 국가경찰 중심의 단일 인사체계 아래 운영하고 있으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승진심사 및 승진시험 역시 경찰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음.

반면 개정안은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위원회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시·도자치경찰본부에 설치하도록 하고(안 제19조), 자치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22조). 이에 따라 자치경무관 이하에 대한 승진심사와 자치경정 이하에 대한 승진시험이 국가경찰 체계와 분리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의 기본 구조에 맞추어 승진체계 역시 지방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경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음. 또한 지역별 치안 여건과 조직 운영 특성을 인사 운영에 반영하고,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지방 차원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측면에서도 일정 부분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다만 승진은 상위 계급의 결원 발생 등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인사 제도라는 점에서, 시·도별 정원 규모 및 결원 현황의 차이에 따라 승진 기회에 상당한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정원 규모가 작은 시·도의 경우 승진 적체가 심화되거나, 상대적으로 결원이 많은 시·도에서는 승진 기회가 확대될 수 있어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치경찰공무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따라서 시·도 간 불합리한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진 인사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라. 정년 (안 제32조)

개정안은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모두에게 동일한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을 적용하면서도, 징계로 인한 강등 시 계급정년 산정 특례, 비상사태 시 계급정년 연장 및 자치경찰 경력의 계급정년 산입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은 국가경찰공무원에게만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	전부개정안
제30조(정년) ① (생략)	제32조(정년) ① (현행과 같음)
② 징계로 인하여 강등(경감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u>경찰공무원</u> 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② ----- ----- <u>국가</u> <u>경찰공무원</u> ----- ----- -.
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무	④ ----- ----- ----- ----- -----.

현행법	전부개정안
관 이상의 <u>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u>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총경·경정의 <u>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u>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u>국가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u> ----- ----- ----- 국 <u>가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u> -----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 <u>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으로</u> 근무한 경력이 있는 <u>경찰공무원의</u> 경우에는 그 계급에 상응하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연수(年數)를 산입한다.	⑥ ----- ----- <u>자치경찰공무원</u> ----- ----- - <u>국가경찰공무원의</u> ----- ----- -----.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을 규정하면서,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 전 계급의 근무연수를 반영하여 계급정년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²⁾,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에서는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개정안은 안 제32조에서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모두에게 동일한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을 적용하면서도, 강등 시 계급정년 산정 특례(안 제32조제2항), 비상사태 시 계급정년 연장(안 제32조

2) 예를 들어 경무관으로 2년 재직한 후 총경으로 강등된 경우에는 총경 계급정년(11년)을 새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무관 계급정년(6년)을 기준으로 이미 재직한 2년을 공제하여 4년 후 계급정년에 도달하게 됨.

제4항) 및 자치경찰공무원 경력의 계급정년 산입(안 제32조제6항)은 국가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인사체계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국가경찰의 인력 운영상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비상사태 시 국가 차원의 치안 유지와 광역적 경찰력 운용을 담당하는 국가경찰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급정년 연장 등의 특례를 유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음.

다만 동일한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 체계를 적용하면서도 일부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특히 강등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 산정(안 제32조제2항)과 관련하여 국가경찰공무원은 강등 전 계급의 근무연수를 반영하는 반면, 자치경찰공무원은 강등 후 계급의 계급정년만 적용받게 되는바, 동일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 정년 산정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³⁾. 이는 동일한 계급정년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정년 산정 방식은 달리 적용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측면의 검토가 필요해 보임.

3) 예를 들어 국가경찰공무원인 경무관이 2년간 재직 후 총경으로 강등된 경우에는 경무관 계급 정년(6년)에서 이미 근무한 2년을 차감하여 4년 후 계급정년에 도달하게 됨. 반면 자치경찰공무원인 자치경무관이 동일하게 2년 재직 후 자치총경으로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 전 계급의 근무연수가 반영되지 않아 자치총경의 계급정년(11년)이 새롭게 적용됨. 이에 따라 동일한 강등처분을 받더라도 국가경찰공무원은 4년 후 계급정년에 도달하는 반면 자치경찰공무원은 11년간 재직할 수 있게 되어 정년 산정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안 제32조제6항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국가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 산정 시에는 반영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국가경찰공무원 경력을 자치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 산정에 반영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개정안이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 상호 임용 및 인사교류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력 인정 범위를 일방향으로만 규정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임.

아울러 개정안은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시 계급정년 연장 규정을 국가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치경찰 역시 재난 대응, 지역 경비 및 주민 안전 확보 등 공공안전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비상사태 시 인력의 안정적 운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따라서 계급정년 연장 규정을 자치경찰공무원에게도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종합하면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인사체계를 분리하면서도 정년 제도는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바, 강등 시 계급정년 산정 방식, 국가·자치경찰 간 경력 인정 범위 및 비상사태 시 계급정년 연장 규정 등에 있어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 차이를 두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마. 신규채용(안 제10조)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 체계에 맞추어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대상을 정비하고,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 상호 임용 및 자치경찰본부장에 대한 개방형 임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법	전부개정안
제10조(신규채용) ①·② (생략)	제10조(신규채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경찰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③ -----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1. -----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경찰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

현행법	전부개정안
<u>재직한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u> <u>재임용하는 경우</u> 2. (생략) 3. <u>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u> 4. (생략) <u><신설></u> 5. <u>섬, 외딴곳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u> 6. <u>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u> 7. <u>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u> <u><신설></u> 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	<u>재직하였던 계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u> 2. (현행과 같음) 3. -----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 ----- 4. (현행과 같음) 5. 「국가공무원법」 제85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에 따라 재학 중에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6. <u>공개경쟁시험에 의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섬---</u> <u><삭제></u> 7. <u>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u> 8. <u>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국가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u> 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

현행법	전부개정안
집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임용하는 경우 <u><신 설></u> ④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에 대한 제2항제2호의 교육훈련, 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의 계급,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전보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해당 시·도자치경찰본부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시·도자치경찰본부장을 임용하는 경우 ④ ----- ----- ----- ----- ----- ----- ----- ----- -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 -----.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 원칙과 함께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실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확보, 특수지역 근무자 충원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의 국가경찰공무원 임용 등을 경력경쟁채용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인사체계를 분리하는 구조에 맞추어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대상과 사유를 정비하고 있음. 특히

안 제10조제3항제8호는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국가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제3항제10호는 시·도자치경찰본부장을 외부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먼저 안 제10조제3항제8호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상호 임용을 일반화함으로써⁴⁾ 조직 분리에 따른 인사 경직성을 완화하고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음. 특히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별도의 조직 및 인사체계로 운영하면서도 양 기관 간 상호 임용 및 인사교류 제도를 함께 두고 있는바, 이는 조직 분리에 따른 폐쇄성을 방지하고 광역범죄 대응, 재난 대응 및 공동사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인적 교류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은 임용권자, 인사운영 주체 및 복무체계 등이 서로 다른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임용 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될 경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별도의

4)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 상호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경찰공무원법」 제10조(신규채용) ① 경정 및 순경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1. ~6. (생략)

7.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으로 자치경찰공무원을 신규임용(이하 “특별임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인사체계로 운영하려는 개정안의 체계와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다음으로 안 제10조제3항제10호는 시·도자치경찰본부장을 외부 공개 모집 방식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치경찰 운영에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개방형 인사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음.

다만 현행 경찰 조직에서도 인권감사관, 경찰병원장 등 일부 직위에 대하여 개방형 직위를 운영하거나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하여 별도의 공개모집 절차를 두고 있으나, 이들 직위는 각각 감사·의료 등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별도의 법률상 임용절차와 자격요건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되고 있음.⁵⁾

반면 시·도자치경찰본부장은 시·도 단위 자치경찰 조직 전체를 지휘·감독하는 핵심 직위로서 조직관리뿐만 아니라 지역 치안정책의 집행 및 국가경찰과의 협력·조정 기능까지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개방형 직위와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럼에도 개정안은 외부 공개모집의 대상, 자격요건 및 선발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치안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기준을 보다

5) 예를 들어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외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임용 자격 요건, 추천 절차 및 임명권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안 제10조제3항제5호는 「국가공무원법」 제85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85조는 이미 삭제된 조항인 것으로 확인⁶⁾되는바, 인용 조문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또한 안 제10조제3항제10호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를 인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조문 체계상 해당 조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바, 법률 간 인용관계 및 조문 정합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6) 제85조 삭제 <2022. 12. 27.>

바. 복제 (안 제28조)

자치경찰공무원은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고 국가경찰공무원의 제복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법	전부개정안
제26조(복제 및 무기 휴대) ① (생략) ② (생략) <u><신설></u> ③ <u>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u>	제28조(복제 및 무기 휴대) ① (현행과 같음)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u>자치경찰공무원은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되, 국가경찰공무원의 제복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② <u>국가경찰공무원</u> ----- ----- <u>행정안전부령</u> , ----- -----.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복제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을 제외하고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구분하는 별도의 제복 체계는 두고 있지 않음.⁷⁾

개정안은 안 제28조제3항을 신설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은 시·도조례가

7)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9조에 따라 도조례로 제복을 정하되 경찰공무원의 제복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제복 체계를 두고 있음.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되 국가경찰공무원의 제복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사무를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개정안의 체계에 맞추어 자치경찰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외형적으로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음.

특히 개정안은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자치경찰본부 및 자치경찰대를 별도의 조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제복 역시 국가경찰과 구별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치경찰 조직을 독립된 치안기관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또한 지역의 특성과 상징성을 제복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경찰의 지역성과 주민 친화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자치경찰공무원의 제복에 관한 사항을 시·도조례에 위임하면서 국가경찰공무원의 제복과 구별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도별로 제복의 형태·색상·표식 등이 상이하게 운영될 경우 국민의 입장에서 경찰관 식별에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특히 경찰은 긴급 상황에서 국민이 신속하게 인식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하는 공권력 기관이라는 점에서, 제복 체계가 지나치게 다양화될 경우 국민의 직관적인 식별 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또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으로 출동하거나 현장 대응을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일한 경찰권을

행사하는 기관임에도 제복이 지나치게 이질적으로 운영될 경우 국민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관계 및 역할을 이해하는 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특히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적 분리를 전제로 하면서도 상호 응원, 112 공동출동, 비상시 통합지휘체계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복의 차별화가 경찰 조직의 통일성과 현장 대응의 일체성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따라서 자치경찰의 독립성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국민의 식별 가능성과 경찰 조직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복제 기준은 국가 차원에서 마련하고 세부적인 디자인이나 표식 등에 한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44